

	교원연구학기제운영규정	규정번호	3-5-1
		제정일자	2004.09.01.
		개정일자	2017.03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원연구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연구학기제”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 승인되어 대학의 일상 업무를 떠나 연구에만 전념하는 학기를 말한다.

② “대학의 일상 업무”라 함은 강의, 연구, 학생지도, 위원회활동 등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연구학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서 교수, 연구, 지도의 실적이 우수하며 연구시작일 기준 정년퇴임일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
제4조(선임 및 절차) ① 연구학기제를 희망하는 자는 교과과정 운영상의 지장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매 학기 개강 4개월 전까지 연구학기승인신청서와 함께 연구(연수)기본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추천자 중에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③ 연구학기제 교원 선발은 대학 재직기간, 보직경력, 연수경력, 교수업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5조(선임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선임에서 제외한다.

1.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장기연수, 연구학기 또는 국고지원 산업체연수를 실시하고 최소 5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장기연수, 국고지원 산업체연수를 포함하여 연수교원이 동일 학기에 한 학과에서 1명을 초과한 경우
3. 보직 임기가 만료되기 전의 보직교수. 다만, 신청하는 당해학기로 임기만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6조(인원) 선정 인원은 학기별 3명으로 하되 국외 연구중인 교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포함하여 선정한다. 다만, 교육부 지원에 의한 국내 산업체 연수 교원의 경우에는 2명에 한하여 그 인원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연구기간) 연구(연수)기간은 한 학기 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복무) ① 연구학기제 선임 교원은 지정된 연구(연수)에만 전념하여야 한다.

② 연구학기제 선임 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 학술기관 및 단체나 산업체에서 연구(연수)할 수 있다.

제9조(의무)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구제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대학 소속부서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2년 동안 대학에 재직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한 교원은 동 연구제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연구학기제 선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연구활동결과물은 저서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하며, 결과물은 단독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한다.

④ 연구학기기간 중 받은 박사학위논문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로 본다.

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

의결을 거쳐 발표기한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재) ① 기한 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연구학기제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연구학기 승인을 받은 후 취소할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불허한다. 다만, 대학의 공무로 인한 취소사유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(신분보장) 이 규정에 의한 연구제교원의 연구기간 동안 당해 교원의 신분 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.
2. 보수는 일반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.
3. 이 규정에 의한 연구제교원의 연구기간은 재직연수에 산입하며, 동 연구기간 중 승진 및 승급은 계속 시행한다.

제12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